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정 · 주의

제 목 ○강수계 수변구역 내 불법시설물 관리 소홀

기 관 명 충청남도 금산군

내 용

「○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식품접객업, 숙박업 및 목욕장업, 관광숙박업, 단독주택(다가구주택에 한정), 공동주택,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 업(業)을 영위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(용도변경 포함)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.

「○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관리 및 시설의 설치허가 등을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였다.

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별표3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시설은 주택연면적 230㎡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박사업자는 신고 기준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, 그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88조 및 「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」의 규정에 따르면 반기 1회 이상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,

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, 시설 기준 위반,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 미이행 시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,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.

「건축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·개축,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·공사시공자·현장관리인·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·개축·증축·수선·용도변경·사용금지·사용제한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법 제4장(제40조부터 제47조까지)을 위반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·개축·증축·수선·용도변경·사용금지·사용제한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야영장업이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.

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·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.

환경부장관은 「○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○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○강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○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상수

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금산군 ○
○면과 ○○면 일대 26.56km²를 2002. 9. 18. 수변구역(水邊區域)으로 지정하였다.

그리고 환경부장관은 「○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
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를 금산군수에게 위임
하였다.

금산군 ○○○○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2002. 9. 18. 수변구역을
지정한 이 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수변구역을 관리하고 있다.

[표1] 수변구역 지정 현황

(단위 : km²)

읍면	면적	비고
○○면	16.10	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
○○면	10.46	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
합계	26.56	

※ 금산군 제출자료 재구성

금산군 ○○○○과는 수변구역 내 민박시설의 입지제한 및 민박시설의 오수
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지도·점검 등을, ○○○○과는 민박시설 신고 등의 관리
및 지도·점검을, ○○○○과는 수변구역 내 건축허가 및 지도·점검을, ○○○○
○○과는 민박시설 주변에 야영장 등의 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.

1. 수변구역 내 불법시설 관리 소홀(금산군 ○○○○과)

금산군 ○○○○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민박사업 제한시설
입지여부 점검, 폐수처리시설 점검, 개인하수(오수)처리시설 점검, 가축분뇨배출
시설 점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도·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다.

그러나 ○○○○과는 수변구역 내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지도·점검

계획(“민박사업 제한시설 여부 점검”에 해당)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.

정부합동감사 시 수변구역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미허가 민박시설 2개소를 포함한 총 23개 민박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하고, 불법야영장(오토캠핑장)을 설치·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.

금산군 ○○○○과는 수변구역 내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, 그 시설에 부속된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 상태만 확인하는 등 지도·점검업무를 지극히 태만히 수행하였다.

그 결과 금산군 수변구역 내에 2개의 미허가 불법숙박시설(펜션)과 다수의 미신고 민박시설(증축), 불법 야영장 등이 설치·운영되는 것을 방치하였다.

[표2] 지도·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현황¹⁾

연도		관내 사업장수	점검대상 ①	점검실적 ②	점검율(%) ③=②/①	수변구역 내	
						점검대상	점검실적
2015년	민박사업 제한 시설 여부 점검	16	16	-	-	16	0
	폐수 처리시설 점검	239	148	148	100	-	0
	개인하수(오수) 처리시설 점검	1,056	1,056	71	6.7	73	4
	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	306	306	62	20.3	-	0
2016년	민박사업 제한 시설 여부 점검	21	21	-	-	21	0
	폐수 처리시설 점검	259	122	116	95	-	0
	개인하수(오수) 처리시설 점검	1,154	1,154	98	8.5	81	8
	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	300	300	180	60	-	0
2017년	민박사업 제한 시설 여부 점검	23	23	-	-	23	0
	폐수 처리시설 점검	244	63	40	63.5	-	0
	개인하수(오수) 처리시설 점검	1,211	1,211	87	7.2	86	31
	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	304	304	165	54.3	-	0

※ 금산군 제출자료 재구성

1) 자연부락 안에 있어 수변구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 4개소 점검 : '15년 3개소, '16년 1개소

2. 수변구역 내 불법민박시설 관리 소홀(금산군 ○○○○과)

금산군 ○○○○과는 수변구역 내 민박시설 신고 등의 관리 및 지도·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○○○○과는 수변구역 내 금산군 ○○면 ○○리 소재 ○○○○○ 등 8개 민박시설을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신고수리 하였다.

그러나 정부합동감사 시 신고 된 민박시설이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규정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, 주택연면적 제한규정 230㎡을 초과하여 민박시설을 운영하고 있고, 민박시설에 허용되는 부속동 1개를 초과 설치하여 불법으로 민박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.

그리고 ○○○○과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88조 및 「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」의 규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관련 법률의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했다.

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관내 수변구역 관리를 위하여 1차 점검(2015. 4. 22. ~2015. 4. 24.), 2차 점검(2017. 1. 17.~2017. 3. 31.), 3차 점검(2017. 7. 4.~2017. 8. 4.) 등 3차례의 지도·점검을 실시하였으나, 불법시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지극히 태만히 하였다.

그 결과 금산군 수변구역 내에 2개의 미허가 불법숙박시설(펜션)과 다수의 미신고 민박시설(증축), 불법 야영장 등이 설치·운영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였다.

3. 수변구역 내 불법 건축물 관리 소홀(금산군 ○○○○과)

금산군 ○○○○과는 수변구역 내 건축허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·점검

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○○○○과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법 제 7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금산군 ○○면 ○○리 소재 ○○○○ 등 민박시설 8개소를 포함하여 수변 구역 내 민박시설 18개소는 단독주택(또는 다가구²⁾)으로 건축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에 있다.

정부합동감사 시 수변구역 내 민박시설의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, 「건축법」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불법 신축 및 증축,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다.

금산군 ○○○○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·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, 수변구역 내 입지하면서 「건축법」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민박시설 23개소는 한 차례도 지도·점검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지극히 태만히 하였다.

그 결과 금산군 수변구역 내에 2개의 미허가 불법 숙박시설(펜션)과 다수의 미신고 민박시설(증축), 불법 야영장 등이 설치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였다.

4. 수변구역 내 불법시설 관리 소홀(금산군 ○○○○○○실)

금산군 ○○○○○○실은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업을 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에 대

2) 2014. 7. 29.이전에는 수변지역 내 다가구 주택 입지 가능

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하거나,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,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고,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한다.

금산군 ○○면 ○○리 소재 ○○○○○ 등 2개 민박시설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민박시설로 신고한 범위를 초과하여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고,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³⁾을 충족하지 못한 채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다.

그러나 금산군 ○○○○○○실은 ○○○○○ 등 2개 민박시설에서 불법건축물(미신고 숙박시설)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음에도,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숙박업 관리 업무를 지극히 태만히 하였다.

5. 수변구역 내 야영장(오토캠핑장) 지도·점검 소홀(금산군 ○○○○○○과)

금산군 ○○○○○○과는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야영장업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금산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번지 일원에 조성된 야영장 부지(민박시설 주변 9,292㎡, 오토캠핑장)는 국가하천인 ○강의 제외지(제방 안쪽)에 위치하고 있다.

3) 민박시설 : 주택으로서 최소한의 소방시설만 설치(수도식 소화기 1조이상 구비,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)

숙박시설 :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대상(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설비 등 설치,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무, 위반시 과태료, 소방관서의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.)

동 위치는 계획홍수위(EL. 151.25)보다 2.69m 낮은 지역(EL. 148.56)으로서 침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야영장으로 운영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.

따라서 위 지역은 수변구역임과 동시에 우천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지역⁴⁾이고, 입주한 야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지역에 침수위험 경고표지판 하나 없이 해당지역 마을회에서 간이화장실, 식수대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야영장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으로 설치하였다.

그리고 마을회는 야영장업(오토캠핑장)을 등록도 하지 않고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캠핑장을 홍보하였고, 상기 시설의 이용대가로 최근 3년간 이용객에게 1일 15,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.

금산군 ○○○○○○과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이며, 야영장 이용시기가 연중 여름철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불법행위 단속이 가능하였다.

그러나 금산군 ○○○○○○과는 2017. 11. 9. 금산군 감사과의 상기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지적내용 확인요구에 대하여 마을대표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의 야영장 홍보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.

금산군 ○○○○○○과는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동 지역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, 법과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

4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야영장업 입지 불가

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연환경보전이 요구되는 수변구역에 야영장, 간이화장실, 개수대, 전기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 유발요인을 방치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금산군수는

[시정] 불법으로 설치·운영 중인 민박시설 등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고,

[주의] 앞으로 수변구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·운영 중인 민박시설, 야영장 등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행정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